

상반기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16억...사망자 1263명에 2억 지급

등록 2014.07.24 11:57:08 | 수정 2016.12.28 13:06:49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돼 25일 처음 지급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자 1263명에게 기초노령연금 2억42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6월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이 16억여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58.6%인 9억4185만원은 환수했지만, 나머지 6억6445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유형별로 보면 수급예정자가 소득과 재산명세를 축소 신고하거나 빠뜨려 수급자로 선정되면서 잘못 지급된 기초 노령연금액이 6억842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된 금액도 5억168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라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이 2억425만원에 이르렀다. 18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장기 출타·병원 입원·여행 등 허위 사유를 내세우며 대리 신청해 노령연금을 타냈다.

강 의원은 "새로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잘못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거나 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안전행정부가 각 지자체의 실태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하는 동시에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해, 사망자 수급 또는 허위 소득 및 재산 신고 등에 따른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